

2024년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

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·지원하고자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 및 「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3일

세종특별자치시장

1 신청 개요

가. 신청기간 : '24. 9. 24. ~ 10. 24. (30일간)

나. 신청대상 :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로서 세종시에 소재를 둔 영업소로,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 (***가맹사업자, 법인은 지정불가**)

- 외식업(일반 및 휴게음식점)
- 기타 개인서비스업(세탁업, 이·미용업, 목욕업, 숙박업, 기타 서비스업)

< 신청 제외 업소 >

-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
-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(신청일 기준)
- **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**
- **법인이 운영하는 업소** 또는 **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) 업소**인 경우('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' 확인)
- 옥외가격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

다. 신청방법 :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,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

라. 접수방법 : 우편, 팩스(FAX. 044-300-4129), E-mail(guul14@korea.kr) 또는 방문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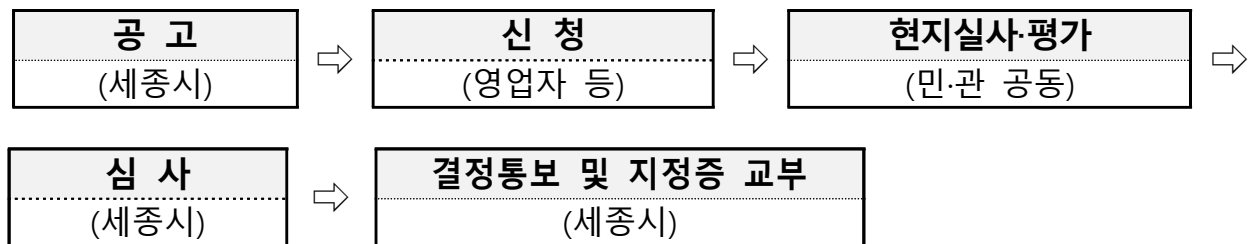
- 제출서류 : **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위생등급 결과서(해당시), 지역사회공헌 증빙서(해당시)**
-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
세종시청 소상공인과 / ☎044-300-4152

※ 팩스로 발송할 경우에는, 반드시 유선전화(☎044-300-4152) 확인 필요

2 지정 기준

- [참고 1]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총점 **40점 이상인 업소**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선정

3 지정 절차



가. (현지 실사·평가) 현지 실사평가단*을 구성하고, 행정안전부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

* 담당공무원, 市 물가모니터요원, 소비자단체 등 참여

나. (최종 결정·통보)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
다. (등록) 해당업소의 정보를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4 지정업소 지원혜택

가. 착한가격업소 인증서(표찰) 교부 및 홈페이지 등록

나. 종량제 봉투, 위생용품 등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(예산범위 내)

다. 상수도요금 20% 감면*(지정 다음달부터 / 예산범위 내)

* 단,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가 있는 경우만 감면 가능

라. 기타 착한가격업소 홍보 지원**

** 홍보 리플릿 제작, 시정소식지 게재, 전국 시·군·구 홍보 공문 발송, 관내 공공기관 직원 이용 독려 등

5 문의처

-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(생활경제담당) : ☎044-300-4152

붙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

붙임

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

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

업 소 일반현황	업 소 명		대 표 자 생년월일								
	업 종		전화번호	(업소)							
	소 재 지 (도로명)		사업자 등록번호								
	최초영업일 (사업자등록일)										
착한가격 메 뉴	품 목	가 격(원)	품 목	가 격(원)							
정책 이행 및 호응 (○표기)	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	이행 () / 미이행 ()									
	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	이행 () / 미이행 ()									
	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	여() / 부()									
	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	여() / 부()									
	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(신청일기준)	여() / 부()									
	지역화폐(여민전) 가맹점	여() / 부()									
위생·청결	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	여() / 부()									
지역사회 공헌	할인 여부 : 경로 우대() / 청소년 할인() / 아동급식카드가맹() / 기타()										
	표창 여부(최근 5년간) : 장관 이상() / 자치단체장()										
※ 첨 부	사업자 등록증 사본, 위생등급 결과서(해당시), 지역사회공헌 증빙서(해당시), 각 1부.										
2024년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(추천)합니다. 2024년 월 일 신청(추천)인 : (인)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							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	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					
업소 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

참고

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

□ 요식업

분야	지정기준			배점
총 점				55점
가격 (30점)	가격수준 (30점)	■ '착한가격메뉴'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	평균가격 이하일 경우	30
위생· 청결 (20점)	① 식품의약품안전처 '음식점 위생등급제' " 좋음 " 이상 시 20점 간주 ②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0점 간주			
	주방 등 (10점)	■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, 배수시설 청결도(5점)		10점
		■ 위생복·위생모 착용도, 칼·도마·수저 소독 여부(5점)		
	매장 내 (7점)	■ 식탁·의자 정리, 행주 등 용도별 사용, 소독용품 비치,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,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		7점
	화장실 (3점)	■ 수세·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- 세척제, 에어타월, 위생종이 구비여부, 남녀 구분 등 ※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(단독이 아닌 경우 '주방 등' 배점에 포함)		3점
공공성 (5점)	■ 지역화폐(여민전) 가맹점			1점
	■ 사회약자 배려(경로우대, 아동급식카드 가맹 등)			1점
	■ 기타 중앙정부, 자치단체 등 표창			1점
	■ 지역 사회 봉사(주민자치회, 자율방재단 등 단체활동)			1점
	■ 기타 특화자원 활용(로컬푸드 이용 등)			1점

□ 비요식업

분야	지정기준			배점
총 점				55점
가격 (30점)	가격수준 (30점)	■ ‘착한가격메뉴’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	평균가격 이하일 경우	30
위생· 청결 (20점)	①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0점 간주			
	주영업시설 (15점)	■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, 용품 등 위생관리, 청결도 ※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		15점
	화장실 (5점)	■ 수세·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- 세척제, 에어타월, 위생종이 구비여부 등 ※ 화장실이 업소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(단독시설이 아닌 경우 주영업시설에 포함하여 평가)		5점
공공성 (5점)	■ 지역화폐(여민전) 가맹점			1점
	■ 사회약자 배려(경로우대, 아동급식카드 가맹 등)			1점
	■ 기타 중앙정부, 자치단체 등 표창			1점
	■ 지역 사회 봉사(주민자치회, 자율방재단 등 단체활동)			1점
	■ 기타 특화자원 활용(로컬푸드 이용 등)			1점